긴급 발주 요청 사유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나. 소요예산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4280-500(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160일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관련규정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5항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o「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27조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긴급 발주 사유

o 동 사업은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 2026년도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해양공간 지도 서비스 통합 및 의사결정 지원 고도화, 공유수면 공간정보 및 해양수산 빅데이터 확충, 해양공간계획 이행점검 업무지원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

- 또한, 공공부문의 예산 조기집행에 동참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의 확보를 위해 긴급 발주 필요

4. 계약추진 방안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o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해양수산부 장관 (직인)